#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제 정 2022. 5. 11 개 정(1) 2025. 1. 7

제1조(목적)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 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 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이 사장인 경우, 공사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7 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 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임원의 검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 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행위, 제9조제1항제2호의 행위, 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 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0조(공사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내부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 제11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 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 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 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제16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 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21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 제23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 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③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 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제25조(과태료) 사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 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바위의 정도가 삼하고 경과실이 거나 바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면직	면직-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면직	면직 면직-정직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면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면직	면직-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확정된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의특별보호조치 결정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자료제출등 거부행위	면직	면직-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면직	면직-정직	감봉	견책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는 신고'신장인이 작정(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				(앞 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언덕서		② 사식이에판게				
지미기러지	③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	-행과 관련	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히	하는 개인이나 법인	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	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적으로	! 받는 개인이나 밭	이 또	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	범인 또	는 단체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				"
	[ ] [ ] [ ] [ ] [ ] [ ] [ ]	0-1 22	,,,,,,,,,,,,,,,,,,,,,,,,,,,,,,,,,,,,,,	1 - 1 -		11. 1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배충돌 방지법」제53	도에 따라 의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지	다를 신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	합니다.
					년	월	일
					딘	큳	Z
			신고·신청인			(서명	! 또는 인)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 소집 ·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u> </u>			
신청인	성명 주소		소속	연락치	[	] 개인 ] 단체		법인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직자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 ] ② 직무관련자			있는 자 [ ] 7	기타			
			석이해관계자의 신 생을 저해할 우려기				단됨	
기피 신청사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현	해충돌 방지법」제53	조2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공	직자의 직무 수	행 관련 기	기피를 신	l청합	 니다.
					년	Ç		일
한국투자공	사 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 공립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는 곳에 √ 표시들 합니다	ł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일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신고·신청인								
	[ ] 신고·신청인 ( <i>/</i>	사적이해관계	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 뒤	 관련 부동산 보	L유·매수 신고.		
			사의 거래 신고)			,		
		니자 (공직지	ト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 	[청)				
조치대상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조치결과								
エハロイ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	성명(	)		
							_	
71-1								
기타 참고사항								
召工小台								
 「공직자의 0	└  해충돌 방지법↓제]	 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	 사적0	  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	 하	
	와 같이 통보합니다				. 4 - 4 1 1	0 , "	_	
					년	월	일	
		하국투지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게는 애딩야는 곳에 √ 표시				(앞 녹)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3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직무관련자	<u>③</u>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 [ ] 공직자의 직무: [ ] 공직자가 소속된	수행과 관련 원 공공기관과	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체결하거나 체결하 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려는 것이	로 받는 개인0   명백한 개인이	  나 법인 또는 나 법인 또는	_ · = 단체
신청하는 조치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유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딘		
			신청인			(서명 <u></u>	또는 인)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성명			소속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	인·단체 등			<u> </u>								
근무기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2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	대리, 고문·자문 등											
<u>회</u>	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	근무기간 업		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2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	간	근	무처(소재지)	직위(직급)	)	주요	2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	  법」제8	조에 따라 민간부	문 업무활동 내역	 을 위와	같이 제출합	 합니다.					
						년	웓	일				
한국투자공사	나시장 <sub>귀중</sub>	<u> </u>		제출인			(서명 또	는 인)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7호 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은 신고인이 삭성하지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들		•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성명		 소속		2	직위(직급)			
신고인			— ·			111(111)			
	성명		신고인과의 곤	· ·					
거래자						속·비속 [			
2 1-41-4	연락처					직계존속·비	속		
			[ ] ① 특수	·관계사업자 					
	성명		 소속	연락차		[ ];	개인 [	 ] 법인	
						[ ]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	-     한과 관련하	나여 일정한 행	위나 조치를	요구하	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거래상대방	[ ] 공직자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여 이익 또는 불	불이익을 직접	<b> </b> 적으로	받는 개인이	나 법인 또	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					로 받는 다른	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	구와 판단인	기대상대명의	식구판단성					
	[ ] 금전 차용		 [ ] 금전 디	 배부		 [ ] 유가경	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_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1-11:11 0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용	역 계약 [	] 공사 기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배충돌 방지법」제92	 돈에 따라 우	니와 같이 진드	무과려자와	 의 거래-	 를 신고한니	  다.		
		. , , , ,							
						년	월	일	
			신고인	<u>I</u>			(서당	명 또는 인)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8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	l(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11.0 -11.1 -		성명	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채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b> 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U 가득세공		용대상자의 <b>가족 중 채용기관</b> <b>'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시</b>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	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찌	
ᆸᅜ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7  0  4   -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기 (확인인)		주소		[ ] 단체 [ ] 기타
(=, 2,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u>!</u> 사항	
1		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sup>†</sup>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b>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b> 작 <b>자의 직계존속 비속</b> 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키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 <sup>9</sup>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원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b>모회사</b> <b>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b>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 <b>다의 직계존속·비속</b> 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이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b>네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b> ?	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실기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는,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① <b>발행주식</b> 분의 30 이상, ③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저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2		
			년	월 일
000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 -	설 골 (서명 또는 인)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	는 곳(	에 √ 표시를	를 합니	<b>라</b>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1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	소속 기	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퇴직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E는 단체 는 단체
	일시		사유						
접촉 사항	<u>ੂੰ</u> ਜਲੋਂ		7111	шІО	ㅂㄷ나디				
	ㅠ영 [ ] 골프 [ ] 여	행 [ ] 시	사행성 오락		부담자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E	F(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혀	해충돌 방지법」제15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	자와의 /	사적 집	접촉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은 신고인이 작성하시		]에는 해당하는 곳				
접수번호		접수일		Σ.	H리일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변	<u></u> 년호	
신고자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i	과정에서 신.	고인의 신분을 공	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	<u>.</u> 체의 대표	자				
	성명		연락처		직업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u>l</u> ,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경위 및 이유						
위반행위 신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위빈	행위를 신고합니	니다.	년	월	일
한국투자공	·사 귀중		신고인			(서명	! 또는 인)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2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ֈֈ.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	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 ] 국민권익위원		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위원회 신고 접수!		접수일자		분공개 동의 ( [ ] 동의 [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	닌고자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	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조사기관 및	및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조사 결과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수사기관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반	 반행위 신고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	의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	기관	000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3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	루번호	
٨١٦٥١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 ] 국민권익위원		관 [ ] 감독기관 [ ] :	수사기관 [ ]	] 감사원	
신고인	위원회 신고 접수! 이첩·송부 일자		접수일자 이첩·송부 내용		개 동의 여부 동의 [ ] 비	동의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지	다 연락처	
위반행위 신고사항	신고내용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처리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위법	반행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0	종결하였음	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	기관	000	)기관장		(서명	!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		
(이의신청인)	직업	주소	,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기관			통보일			
통보받은				さエヨ			
조치사항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히	H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C	에 대한 조치사항의 (	이의를 위의	라 같이 4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기타(	보유·매수 신고 활동 내역 제출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	충돌방지담당관	나 (서명 또는 인)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 점검서

• [ ]에는 해당하-	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② 확인·점검 내용					
③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확인·점검자	년	월 (서명 또는	일 인)
				,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 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 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 월 ㅇㅇ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피초이	성명	소속		
제출인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